

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

1200

피고

학교법인 신동아학원 대표자 이사장 홍순직



560-860

2060452-115334 ↓

(민사과 민사4단독)

2015-001-16738-310

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전주지방법원

2015가단 16738 주위토지 통행등

예정 기일 :

담당재판부 : 민사4단독

법원주사 정인호

직통 전화 : 063-259-5525

팩 스 : 063-278-7182

e-mail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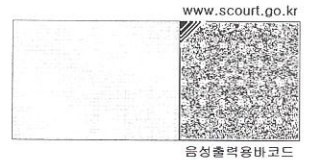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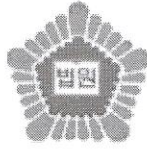
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(송달과 확정내역 포함)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

(<http://www.scourt.go.kr>) '나의사건검색' 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(<http://www.courtauction.go.kr>)

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

전 주 지 방 법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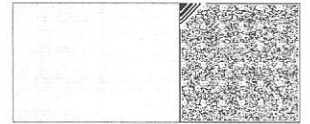
화해 권고 결정

사 건 2015가단16738 주위토지 통행등
원 고 김대송
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459-52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
피 고 학교법인 신동아학원
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00
대표자 이사장 홍정길
소송대리인 최형주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정사항

1. 원고와 피고는,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70 학교용지 127,635㎡ 내 별지 도면 표시 (ㄱ), (ㄴ), (ㄷ), (ㄹ), (ㅁ)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0㎡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,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8-1 답 78㎡ 내 별지 도면 표시 (ㄷ), (ㄱ), (ㄴ), (ㄹ), (ㅁ)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70㎡의 토지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한다.
2.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70 학교용지 127,635㎡ 내 별지 도면 표시 (ㄱ), (ㄴ), (ㄷ), (ㄹ), (ㅁ)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0㎡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은 후,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전주시에 이를 기부채납한다.



3.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8-1 답 78㎡를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 이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포기한다.
4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의 표시

청 구 취 지:

- 가. 피고는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(ㄱ), (ㄴ), (ㄷ), (ㄹ), (ㅁ)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㎡를 통행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.
- 나.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8-1 답 78㎡를 인도하고, 2005. 1. 1.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을 지급하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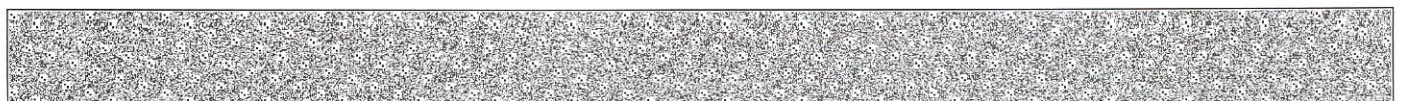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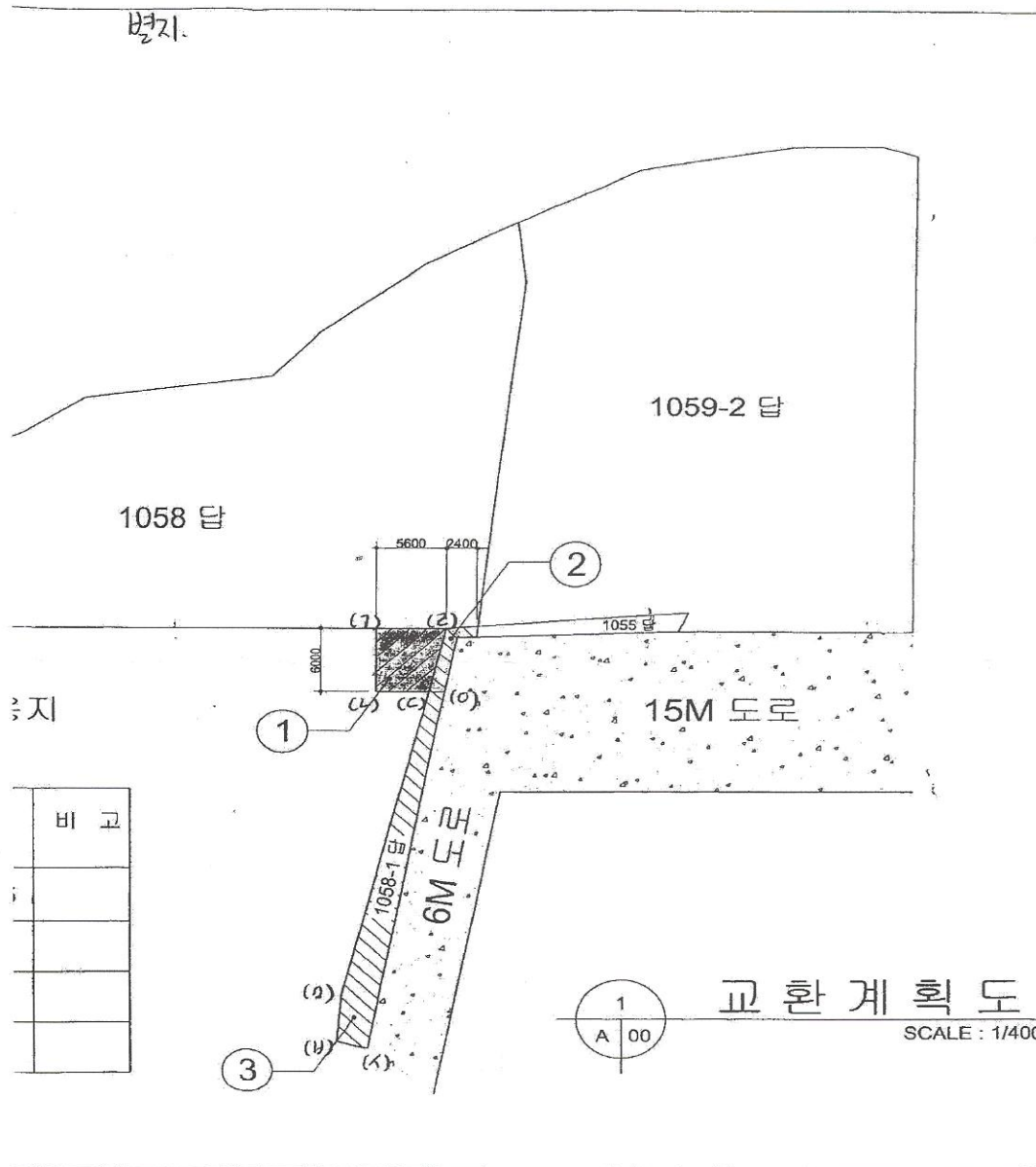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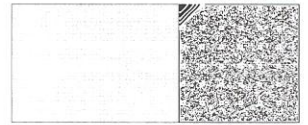
청 구 원 인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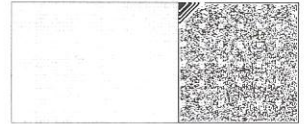
2016. 2. 3.

판사 이 원 근



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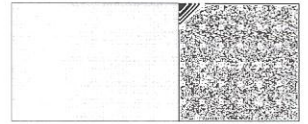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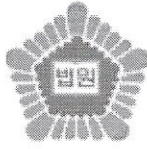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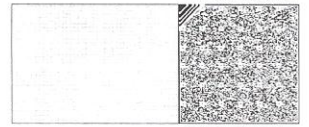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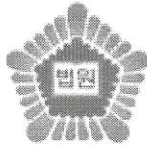
청구의 원인

1. 원고는 "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8 답 1,285㎡, 1058-1 답 78㎡"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"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070 학교용지 127,635㎡"의 소유자입니다.
2. 원고는 "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8 답 3170㎡"를 1981. 7. 29. 매매를 원인으로 1981. 7. 31.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제595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, 위 "효자동2가 1058"은 1992. 10. 2. 위 "효자동 2가 1058-1 답 414㎡", "1058-2 답 135㎡"를, 1993. 3. 25. 위 "효자동 2가 1058-3 답 1,336㎡"를 각 분할하였고, 분할된 위 "효자동 2가 1058-3 답 1,336㎡"는 1993.경 피고에게 학교용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¹⁾, 1998. 9. 22.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제90646호로 "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070"으로 병합되었습니다. 분할된 "효자동 2가 1058-1 답 414㎡"는 1996. 12. 20. 위 "1058-4 답 220㎡", "1058-5 답 116㎡"를 각 분할하였고, 위 "1058-4 답 220㎡"는 전주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²⁾ 1997.경 피고소유의 학교용지(비전대학교)를 연결하는 15m 도로를 개설하였으나, 피고는 정당한 권원없이 위 15m도로와 학교용지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의 "효자동 2가 1058-1 답 78㎡"를 원고의 동의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2005. 1. 1.부터 명도 완료시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인하여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월 금 50만원(향후 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금원을 산출하도록 하겠다.)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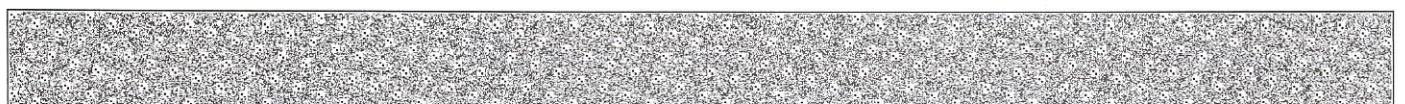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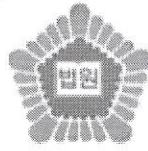
3. 원고는 1981.경부터 분할전 위 “효자동 2가 1058”를 소유하며 경작을 하여 왔으나,
위 “효자동 2가 1058”을 피고와 전주시가 분할하여 “효자동 2가 1058-3 답 1,336㎡”는 피고가 학교용지로, 위 “1058-4 답 220㎡”은 전주시가 도로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
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“(구) 1058-3(1998. 9. 22.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070에 병합)”는 피고가 운영하는 전주비전대학교의 정문과 전주시가 개설한 15m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으로,
원고 소유의 현재 “효자동2가 1058 답 1,285㎡”보다 높이가 3m 이상 높아 현재는 그 경계로 용벽이 세워져 있습니다.
원고는 1981.경부터 분할전 위 “효자동2가 1058”에서 경작을 하여 왔으나, 전주비전대학교의 정문과 그 진출입로인 15m 도로를 개설하면서부터, 농기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진출입도 어려워 더 이상 현재 “효자동2가 1058 답 1,285㎡”의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
4. 이에 원고는 현재 “효자동2가 1058”을 매립하여 통행로를 개설하여 농지로써 사용하고 또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웠으나,
피고 소유의 “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070” 내의 별지 도면 표시 (ㄱ), (ㄴ), (ㄷ), (ㄹ), (ㄷ)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, 부분 20㎡의 통행로가 개설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,
민법 제219조(주위토지통행권) 제1항은 “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(ㄱ), (ㄴ), (ㄷ), (ㄹ), (ㄷ)



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 20m'의 통행로로 개설하여
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.

5. 따라서,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(ㄱ), (ㄴ), (ㄷ),
(ㄹ), (ㄴ)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 20m'의 통행로를
개설하여 사용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고,
피고는 "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058-1 담 78m'" 부동산을 명
도하고, 피고가 위 "담 78m'"에 대하여 2005. 1. 1.부터 명도할때
까지 매월 금 50만원씩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
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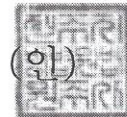


정본입니다.

2016. 2. 4.

전주지방법원

법원주사 정인호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